

의안번호	제 224 호
의 결 연 월 일	년 월 일 (제 회)

충청북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 의 자	연종석 의원 등 7인
발의연월일	2019년 7월 1일

충청북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연종석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24
----------	-----

발의연월일 : 2019년 7월 1일

발의자 : 연종석, 이수완, 윤남진,
김기창, 박병진, 오영탁,
이상식

1. 제안이유

의용소방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지역별 여건을 고려한 정원 규정을 신설하고, 관련법령 개정에 따른 의용소방대원의 장애보상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기 위해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의용소방대 정원 규정 신설(안 제6조의2)

나. 장애보상 규정을 '장애정도'가 확정된 날로 개정(안 제21조)

3. 조례안 : 붙임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붙임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첨부

다. 협의 : 소방본부 대응예방과와 협의

라. 입법예고 : '19. 6. 25. ~ '19. 6. 30.(의회홈페이지)

충청북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2(정원) ① 규칙 제11조제3항에 따른 의용소방대별 정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읍지역 : 남성대 50명 이내, 여성대 50명 이내
2. 면지역 : 혼성대·남성대 30명 이내, 여성대 20명 이내
3. 전담·전문의용소방대 : 30명 이내
4. 본대 소속 지역대 : 20명 이내

② 소방서장은 지역여건 등을 감안하여 제1항에 따른 범위에서 정원을 일부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21조제1항제2호 중 “장애등급이”를 “장애정도가”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 계 법 령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의용소방대의 설치 등) 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

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또는 소방서장은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항에 따라 의용소방대를 설치하는 경우 남성만으로 구성하는 의용

소방대, 여성만으로 구성하는 의용소방대 또는 남성과 여성으로 구성

하는 의용소방대로 구분하여 설치할 수 있다.

② 시·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은 지역특수성에 따라 소방업무 관련 전

문기술·자격자 등으로 구성하는 전문의용소방대(이하 "전문의용소방

대"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③ 시·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은 법 제2조제4항에 따른 전담의용소방대

(이하 "전담의용소방대"라 한다)를 운영하려는 경우에는 별표 1에 따른

시설과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의용소방대의 설치 등

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또는 특

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7. 8. 29.>

제11조(정원 등) ① 의용소방대에 두는 의용소방대원의 정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 8. 29.>

1. 시·도: 60명 이내

2. 시·읍: 60명 이내

3. 면: 50명 이내

4. 법 제2조제3항에 따라 관할 구역을 따로 정한 지역에 설치하는 의용소방대: 50명 이내

5. 전문의용소방대: 50명 이내

② 의용소방대원은 관할 행정구역(동·리) 단위로 균형있게 배치되도록 임명하여야 한다.

③ 시·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은 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정원의 범위 내에서 시·도의 조례로 정원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은 행정구역이 통폐합되는 경우 행정구역 통폐합 이전 각각의 의용소방대 조직과 정원을 그대로 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17. 8. 29.>

제21조(재해보상) ① 법 제17조에 따른 재해보상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요양보상 2. 장애보상 3. 장제보상 4. 유족보상

② 제1항에 따른 재해보상의 종류별 지급기준은 별표 8과 같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재해보상금의 지급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장애인의 장애 정도 등) ①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이하 "영")

이라 한다) 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 정도는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9. 6. 4.>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장애 정도의 구체적인 판정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08. 3. 3., 2010. 3. 19., 2019. 6. 4.>

[제목개정 2019. 6. 4.]

[시행일 : 2019. 7. 1.] 제2조

충청북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1. 사업개요

- 의용소방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지역별 여건을 고려한 정원 규정을 신설하고, 관련법령 개정에 따른 의용소방대원의 장애 보상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기 위해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

2. 비용 발생 요인

- 의용소방대 정원 증가로 인한 소집수당, 피복비, 자녀학자금 등 비용

3. 관련조문

- 충청북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조례 제6조의2(정원) ① 규칙 제11조제3항에 따른 의용소방대별 정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읍지역 : 남성대 50명 이내, 여성대 50명 이내
 2. 면지역 : 혼성대·남성대 30명 이내, 여성대 20명 이내
 3. 전담·전문의용소방대 : 30명 이내
 4. 본대 소속 지역대 : 20명 이내
- ② 소방서장은 지역여건 등을 감안하여 제1항에 따른 범위에서 정원을 일부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4. 비용 추계결과

가. 재정수반요인 : 정원 230명 증가('19년 5,260명, '20년 5,490명)

나. 추계의 전제 : '19년 예산 대비 '20년 정원으로 산출

구 분	합계(천원)	소집수당	피복비	자녀 장학금	기타 (경상비 등)	비고 (정원)
2019년	4,339,096	2,345,974	470,700	466,940	1,055,482	5,260
2020년	4,482,669	2,448,540	491,300	487,347	1,055,482	5,490
증가	143,573	102,566	20,600	20,407	0	-

※ '19년 예산 대비 '20년 143,573천원 증가

다. 추계결과 : '20년부터 향후 5년간 총 717,865천원 추가 소요

라. 재원조달방안 : 도비 100%

5. 연도별 비용추계서

(단위:천원)

구 분	합계	1차년도 (2020년)	2차년도 (2021년)	3차년도 (2022년)	4차년도 (2023년)	5차년도 (2024년)
세 출	22,413,345	4,482,669	4,482,669	4,482,669	4,482,669	4,482,669
소요예산	22,413,345	4,482,669	4,482,669	4,482,669	4,482,669	4,482,669